

일련번호	3	감사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구로구청 (가부서)		종류	인원	조치방법
		주의요구	2	금액(천원)

제 목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거짓 통보

【 지적내용 】

구로구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은 '17. 2. 8.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8.11.30., 금액 4,326백만 원)을 체결하여 '구로구 ○○○○○○○○ 신축공사'(이하 '이 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으며,

'17. 4.11. B사와 이 건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완수 '18.12.13., 금액 71백만 원)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수급인은 '18. 4.23. 이 건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준공 '18.11.30, 금액 69백만 원)”에 대하여 C사(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제2항에 따르면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3호, '17.2.4.)」 제2장 공사 감리업무 2.4.3. 공사계획서등의 검토·확인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현장 기술자 자격, 경력, 배치계획사항과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서도 건축사는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관리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및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16. 9. 국토교통부)」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수급인은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건설기술자를 현장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거짓으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3호, ’17.2.4.)」 제2장 공사감리업무 2.4.3. 공사계획서등의 검토·확인에 따라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배치계획사항과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하는데 서류상의 기술자와 현장 배치 기술자가 상이한데도 제대로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며, 발주자 또한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시정조치 하지 아니하였다.

[표]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현장배치 현황

연 번	공 사 명	하수급인	전문공종	계약금액 (백만 원)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기술자 (자격종목)	비 고
1	구로구 ○○○○ ○○○○ 신축공사	C사	방수공사	69.3	18.4.23.~ 18.11.30.	갑 (건축특급)	하도급건설공사대장신고시기술자 ※ KISCON(하도급) 확인
						을 (건축초급)	실제 현장배치 기술자 ※ KISCON(도급) 및 수급인 확인

【 조치할 사항 】

구로구청장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거짓으로 통보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를 위반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과태료)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장 공사감리업무 2.4.3. 공사계획서등의 검토·확인에 따라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배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현장기술자의 배치 검토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조치